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

2023.6.

문화체육관광부

1 반다비체육센터 개념과 유형

1) 반다비체육센터의 개념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함

● 반다비체육센터는 기존 체육시설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생활권에 공급하여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됨. 즉, 기초자치(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 방향을 잡고 있음. 이를 위해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하고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2)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모델

(1) 체육관형

- 체육관형은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등으로 구성된 기본 체육관형과 수중운동실(2~3레인 규모)을 추가한 복합체육관형으로 구분되며 기본체육관형은 30억원, 복합체육관형은 추가 10억원(총 40억원)이 건립 지원됨
- 지자체의 종목별 수요(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사격, 역도, 유도, 탁구, 펜싱 등)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 특수학교 내 건립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도 가능

(2) 수영장형

- 수영장형은 수영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종목별 수요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 수영장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중리프트, 가족 탈의실 및 샤워 보조기구,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의 입수 보조시설을 설치
- 특수학교 내 건립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도 가능하며 총 40억원이 건립지원됨

(3) 종목특화형

- 종목특화형은 지역 특화 종목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구성하며 체력단련장이나 수중운동실 등 기존 서비스 공간 외에 특정 종목의 전국 대회(리그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경기장을 시설 내 설치하며 30억원 건립 지원됨
- 지역별 특성 살려 해양(수상)스포츠형, 동계스포츠형 등을 건립하여 전국적으로 종목 다양성 확보 가능
- 수중운동실(2~3레인 규모)을 추가할 경우 추가 10억원(총 40억원)이 건립 지원됨

표 1.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모델

=	 구분	지원 액수			
체육관형	교 內 건립 존 시설 리	병옥관형 도업시설 문성및 설립 성비	① 체육관형 - 체육관형 기본 모델	체육기금 30억 원 ※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 억 원 추가 지원 (총 40억 원)	
* 특수학 및 기: 모델링		제유관 소재유관 다유적용 국가운 가족성 등 필스장 GX 운동자방실 프론트 등	② 복합체육관형 - 체육관형 모델에 수중 운동실(2~3레인 규모)을 추가한 모델		
수영장형 * 특수학교 內 건립 및 기존 시설 리 모델링 가능		全分配 年世祖 (五四) 本	③ 수영장 복합형 - 수영장형 기본 모델		
		可称是 第4.8 GA 可提供書 可允達 可存在者 可允達 可存在者 可允 今2万多年	④ 수영장 강화형 -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수영장 복합형 모델	체육기금 40억 원	
	동·하계 종목특 화	기초지자체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 양궁 등) 또는 동계종목(아이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체육기금 30억 원		
종목 특화형	해양 종목특 화	해양종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 해양스포츠(조정, 요트 등) 특화시설 건립	※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 억원 추가 지원		
	장애 유형 특화	시각, 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종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설 건립 ※ 지역별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그	목(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고려하여 선정	억원추가지원 (총 40억원)	

2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주요사항

1) 운영 주체

• 수탁단체(위탁기관)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독립적인 회계운영 및 독자적인 운영규정 마련〈별첨_관리·운영규정 참조〉
-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주체는 지역(시·군·구)장애인체육회,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복지 단체 등의 민간 위탁 혹은 지자체 직접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반다비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시·군·구)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주체로 하는 것을 권고
 - 지역장애인체육회의 시설관리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 및 전반적인 시설운영은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담당하고, 기타 설비 및 시설관리 운영은 지방공기업(지역 시설관리공단 등) 담당하는 방식 고려
- 운영 주체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주체를 결정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선임 시 운영대표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자격 미달 시 변경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단체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표 3. 운영 주체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지방공기업	• 시설 운영관리(건축, 전기, 소방) 전문인력 배치 • 행·재정적 안정적 관리	 한정된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수급 한계 유관기관 협력 미흡 회원관리 및 민원대응 부족 	
지역 장애인체육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관리 장애인 전문지도자 확보 유관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연계사업 추진 회원관리 및 민원대응 	관리 운영 전문인력 부족지자체 연계 미흡시설 개보수 등 시설관리 미흡	

표 4. 운영 사례

운영 사례(참고자료)					
세종시 장애인형	전반적인 시설관리 운영 • 지역시설공단	프로그램 운영관리 •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 지역시설공단 •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운영관리	• 세종시장애인체육회 •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2) 조직 구성

- 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획총무,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분야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이 요구됨
- 기획·총무 분야에서는 예산, 결산, 조직, 기구, 복무 관리와 사업부서 회계관리, 자금조달 및 운영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을 담당함
-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설비 유지관리, 비상계획, 보완 관리, 대관 및 공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함
- 프로그램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도자 관리, 대회 지원, 정부 지원사업 관리(공공스포츠클럽,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장애인바우처 지원 등) 등의 역할을 담당함

3) 시설 설계

(1) 일반사항

- 반다비체육센터의 공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2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을 충족하며, 반다비체육센터 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
-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최소 20면 또는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조성
 - ※ (장애인 우선 이용 및 배려공간 지정) 장애인 체육시설인 만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와 시설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장애인 우선이용과 배려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사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 배려 공간 지정

- 체육시설 규모, 형태에 따라 장애인 배려공간으로 지정 운영
- 체육 시설(코트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을 경우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사용





수영장 배려공간 지정 예시

배드민턴장 배려공간 지정 예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 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8)〉

- 반다비체육센터 시설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표지판 설치 필요
 - 복합화 사업의 경우라도 별도의 독립된 표지판(간판)을 설치하여 반다비체육센터가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조치
 - ○○장애인체육센터, ○○장애인레저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통합체육센터 등 명칭 사용 금지

표지판 안



● 시설 안내 및 표지판은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표현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 안내 권장

픽토그램 활용 예시



(2) 체육관

- 체육관은 좌식배구, 골볼, 휠체어농구 등 최대한 많은 종목의 장애인 스포츠 전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 체육관의 규격은 지자체 사정에 맞게 조절하되 농구코트(28*15m) 규격 이상, 농구골대 뒤 3m 이상 공간 확보하고 천정의 높이는 운영하는 경기종목을 고려하여 설계
- 체력단련실 내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배치 및 안내
- 체육관내 접이식 농구골대. 조립식 관람석. 장애인스포츠용 휠체어. 용·기구 보관 창고 확보
- 체육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분리막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체육관 벽면에 보호대 설치

(3) 수영장

① 수영장 설계 일반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 수영장업 시설 기준을 준용하되 장애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규격 설정(폭2.5m, 길이 25m, 수심 1.3m이하로 설계)
- 수영장 측면 통로는 휠체어 두 대가 동시에 교차 가능하도록 폭 조절
- 체온 조절을 위한 공간 또는 장치 마련 필요
- 수영 용품 및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필요
- 수영장 탈의실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필요
- 응급조치실(지도자실)은 수영장 수조 접근이 용이한 곳에 관망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내부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 크기를 제한
- 증증장애인샤워실(가족샤워실)을 최소 4개소 설치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 및 발걸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수영장의 모든 이동 동선에는 단차(턱)가 없어야 함

② 수영장 풀 접근성

- 수영장 입·퇴수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수영장 풀 옆으로 경사로와 기타 장애인을 위한 입수용 계단 설치 필요
- 경사진 접근로(입수 경사로)는 탈의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

• 수영장 출입구부터 탈의, 샤워, 입수하기까지 최적 동선을 고려

〈참고〉 수중운동실

- 수중운동실은 장애인, 노인 등의 수중 운동(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위해 수영장이 설치되지 않는 '체육관형 센터'와 '종목특화형 센터'에 설치를 권장
- 전체 권장면적은 360m²이나, 최소 240m² 이상 설치
- 수조 크기는 150㎡(2~3레인 규모)이상 권장하며 최소 120㎡이상 설치
 - (수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1m 이상, 최대 1.2m 이하로 설계
 - (사워실) 증증장애인 사워실을 최소 3개소 설치(휠체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4) 종목 특화형 시설

- 종목특화형 시설의 경우 지역 특화 종목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구성
- 골볼 골대, 좌식배구 지주대, 쇼다운, 보치아 장비 등 용·기구 보관 창고 확보
- 체력단련장이나 수중운동실 등 기존 서비스공간 외에 특정 종목의 전국 대회(리그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경기장을 시설 내 설치
- 수중운동실은 장애인, 노인 등의 수중 운동(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위해 수영장이설치되지 않는 '체육관형 센터'와 '종목특화형 센터'에 설치를 권장

4) 프로그램 구성

- 반다비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등의 특성을 두루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체육시설 및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시 어느 한 유형의 장애인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시설 및 유형별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종목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종목의 기반 시설로서 활용되어져야 함
- 또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 친화적 스포츠 복지 체육시설을 지향함
- 장애인체육시설 이용 현황 조사 결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14~18시(75.7%),
 8~12시(6.8%), 12~14시(6.8%)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지역공동체 친화적 스포츠 복지 체육시설로서의 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 2~6시에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통합 프로그램을 위주로 편성하되.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배려공간 운영

표 2.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운영기준

시설 유형	구분	배려공간 기준	운영 방법
수영장	25m×7레인 이하	1개 레인	
	25m×8레인 이상	2개 레인 (장애인 이용자 수에 따라 조정 운영)	전일제시간제(장애인 강습 및 자유수영)
체육관	구기형(농구, 배구 등) 라켓형(배드민턴, 탁구 등)	1개 코트(면) 이상	• 장애인 배려공간 마크 표시 • 장애인(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헬스장	체력단련실	이용가능 장비 설치 (규모에 따라 조정)	장애인 이용가능 기구나 장비에 배려공간 마크 표시 장애인(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 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8)〉

● 또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5) 운영비

-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본형의 경우 연평균 9.7억 원, 체육관과 수영장이 함께 있는 복합형의 경우 연평균 11.7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상황(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임
- 장애인 유관 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 구성에서는 '지자체 지원비'가 77.9%, '자체수입금'이 15.3%, '후원금·기부금'이 2.3%의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반다비체육관이 스포츠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60%이상 지자체 지원비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 유관 체육시설 운영 현황 분석 결과, 거점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4개소 중 12개소에서 지자체 보조비를 100% 받고 있으며, 장애인 유관 체육시설의 경우 지자체 보조비를 평균 50%이상 지원받고 있음
 - 지자체 지원비 비율이 50% 이하 일 경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요금할인이 되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보다는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설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 이용률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지자체 지원비 확보가 충분히 안 될 경우 정부 생활체육 지원사업(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생활체육대회 대관 등)과 연계를 통한 운영 수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대시설 입점과 같은 수익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이용률과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정부 지원사업 연계

●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 재정지원 및 시설 이용률 증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지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7)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연계

-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이용 프로그램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이 31.6%, '공공장애인 스포츠클럽'이 12.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체육시설 프로그램 등록 기피 및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서 '지도자 배치 문제'(30.8%)와 같은 인프라 부족의 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특히 강사의 전문성 문제는 전문 지도자 자격의 유무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확충과 함께 장애인 체육 지도 현장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집약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함

8) 입주 권고 시설

-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지역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체육 단체 입주를 통해 지역 장애인체육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다비체육센터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대상 장애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

9)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 운영 관련 조치 사항

(1) 반다비체육센터 내 타 기관 입주 관련

- 지역장애인체육 전담기관(시·군·구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 및 지역 장애인체력 인증센터 입주 권고
- 해당 반다비체육센터의 시설기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국가사업(타 부처 및 지자체사업 포함) 입주 허용
- 다만, 수탁단체(위탁기관)의 법인사무소, 민간단체 사무소 등의 입주 금지 및 이전 조치

(2) 반다비체육센터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해당 사업의 변경과 공간의 원상복구 조치

(3) 반다비체육센터의 수용정원 초과 사용 금지

● 당해 시설의 수용정원 초과 사용을 금지하여 체육활동 참여의 적정 공간 확보. 이동권 및 접근성 제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 방지

(4) 셔틀버스 운행

●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이용자 시설접근성 제고를 위한 셔틀버스(장애인 특장차 등)는 안전교육 등 관련 요건을 갖추고 운행

(5) 이용료 반화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 준용

표 6. 이용료 반환기준 예시

¬H	비를그에
구분	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 운영 업무 4

1) 기획·운영관리

- 개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 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함

■ 업무 내용

(1) 반다비체육센터 유형별 독자적인 관리·운영 규정 관리

- 반다비체육센터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체육 전용 시설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인 운영규정 마련
 - 직영시설: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련 규정에 반다비체육센터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함
 - 위탁(대행)시설: 수탁한 반다비체육센터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대행기관)의 규정에 반다비체육센터가 명시된 경우 별도의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민간시설: 자체적인 운영규정 제정(권장) 별첨 참조

(2)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간사업계획 관리

- 반다비체육센터는 지역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공공스포츠 기관으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반다비체육센터가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 하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일정 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치 하도록 함
- 반다비체육센터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행하도록 함

- 연간사업계획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지역의 특성 및 인구 비율을 고려한 비장애인 대상 통합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함

(3) 반다비체육센터 중앙협의체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간 운영실적 관리, 현장점검, 종합평가 등 반다비체육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지원을 하여야 함

(4)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실적 보고

● 반다비체육센터는 연간 사업수행결과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현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함

(5) 반다비체육센터의 평가관리

- 반다비체육센터의 연간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종합평가의 실행에 협조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조치 해야 함

(6)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 반다비체육센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7) 반다비체육센터 종합평가

-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종합평가 주기 : 2년
- 결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미흡사항 중 법적기준 위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2) 종사자 관리

- 개요

관계법령에 따라 반다비체육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반다비체육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업무 내용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 반다비체육센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제 1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함
- 체육지도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시제22조 제 1항에 따라 체육시설 규모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

(2) 종사자의 배치관리

👁 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획총무,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분야의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표 7. 분야별 주요 업무

분야	주요 업무
기획·총무	 예산, 결산, 조직, 기구, 복무 관리 사업부서 회계관리 자금조달 및 운영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
시설관리	체육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설비 유지관리 비상계획, 보완 관리 대관 및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도자 관리, 대회 지원 정부 지원사업 관리(공공스포츠클럽,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장애인바우처 지원 등)

- 반다비체육센터의 종사자는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전일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함
 -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3) 종사자의 채용관리

• 공개모집 원칙

-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대표자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반다비체육센터 수탁단체(위탁기관)에서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탁단체(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고용보장 및 승계를 위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탁단체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수탁단체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수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4) 종사자의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직원)와 사용자(시설장)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5)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 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시설장)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 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지급 금지 조치

(6) 종사자의 지도력 개발관리

- 반다비체육센터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예산 편성 지원
 - 직영 및 위탁시설의 예산에 지도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현장견학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
 - 각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자체적인 지도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교육을 지원 하도록 지도

(7) 종사자의 처우관리

- 반다비체육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반다비체육센터 종사자 보수수준을 규정에 근거하여 설정해야 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업무 중 심리적 · 육체적 고충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8) 종사자의 교육

● 반다비체육센터 설치·운영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9)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0)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11)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1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5) 기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기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반다비체육센터 대표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6) 종사자 근무시간의 운영관리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지도자의 배치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주말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활성화할 경우 지도자의 주말 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휴무일 조정, 주말 전담 지도인력의 확보 및 순환식 주말 담당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운영
- 야간 프로그램 및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 전담 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거나 순번제로 야간시간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용시간을 관리
- 공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중의 휴일을 배정하여 법정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근무하게 함
-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자 관리

- 개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운영을 개선하고 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 보고하여야 함

- 업무 내용
- (1) 이용시간 관리
- 개방시간
 - 주 말 : 시설 개방(의무), 개방시간 : 06시~21시(권장)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휴관)

- 평일: 22시까지 운영(지역에 따라 시간 자율 조정)

• 시간관리

- 반다비체육센터는 수요자인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생활시간 및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영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 종료시간에 맞추어 폐관하지 않도록 함
-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되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및 장애인 배려공간을 운영하도록 함
- 주중의 평일 개방시간은 22:00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중 운영은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아, 아동, 부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
-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도록 함
- 주말 개방은 모든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주말 활동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시설 이용을 통해 주말 시간 시설운영을 활성화함

(2) 장애인 이용률 관리 및 보고

-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권고)
-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반다비체육센터와 현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이용률 제고 방안 개발 및 실행관리
 -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 관리
 - 시설 공간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호감도 제고
 - 장애인 자율이용 및 자치활동 지원(클럽, 동호회 등)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장애인 단체 및 특수학교와 연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 주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법의 개발
- 이용률 산정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별 및 분기별로 반다비체육센터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 받아 취합 정리하여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에 '일일 장애인활동실시 현황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자 명단, 프로그램별 출석부 등의 장부 ·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기록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예산 관리

- 개요

반다비체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하여야 함

● 업무 내용

(1) 예산지원

- 지자체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의 설치·운영 경비
 - 반다비체육센터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지자체는 반다비체육센터가 지역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운영비 대비 60%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장애인 이용률이 6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을 권고함
 - 광역형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운영비 평균 지자체 100% 수준
 - 장애인 유관 체육시설 운영비 평균 지자체 부담 비율 50% 이상 수준

(2) 예산 집행 관리

- 반다비체육센터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이용료, 기타보조금, 부대수입, 협찬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지자체 지침이나 회계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함
- 위탁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수탁법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을 유지하여 재정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산편성 및 재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운영위원회-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의결, 확정
- 예산 집행 결과는 결산, 감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시·군·구 등 행정기관 보고(정산)를 거쳐 결과 공시

5)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개요

반다비체육센터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유영을 지도·감독하고 반다비체육센터유영위원회 유영위원으로 참여 하여 반다비체육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

● 업무 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목적
 -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역장애인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 4인 이상 8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추천 하고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친인척 등 운영대표와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제외
-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참여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부의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운영
 - 반기별 1회,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월)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6)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 개요

반다비체육센터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중심으로 운영하고 사회환경 및 장애인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업무 내용

(1)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반다비체육센터 유형별 고유 기능에 맞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신체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가 사회 환경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지역 장애 유형별 인구를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반다비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촉진
 - 반다비체육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특히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의 활성화 촉진
 - 반다비체육센터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하여야 함
- 지역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프로그램 촉진
 - 지역 내 문화, 관광, 복지분야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프로그램의 활성화 촉진
 - 지역 내 관련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평가관리

- 반다비체육센터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다비체육센터 등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의 자체 프로그램 평가관리 도입
 -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 반다비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3)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

- 장애유형별 단체.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 지원
 -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 신체활동 활성화에 공동 참여토록 지원
- 지역단위 장애인체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지원
 - 지역단위 장애인체육회의 주관하에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유형별 단체.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재활병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체육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지원
 - 지역 내 반다비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장애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4)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지역교육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반다비체육센터가 학교교육 · 평생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특수학교 등과 연계하는 행정적인 지원 수행
 - 반다비체육센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반다비체육센터 행사의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 중 통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 등 포상을 지원

(6) 지역사회 의견 반영

●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심화된 지역사회 이래를 기초로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방향 및

사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구조를 반영한 체육활동 기반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7) 반다비체육센터 및 사업 홍보

• 반다비체육센터의 주요 사업내용. 계획. 활동. 성과 및 업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신뢰도와 참여. 지지를 확보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8)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반다비체육센터 재정 운영

- 반다비체육센터는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재화적 성격과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능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 때문에 저렴한 시설 이용료 등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 따라 반다비체육센터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용료 할인 및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부사업들과 연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표 8. 정부기관 장애인 대상 주요 지원사업

부서	정부기관 장애인 대상 주요 지원사업(바우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지원, 장애인스포츠 용·기구 지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교육부	발달장애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

7) 시설물 및 안전관리

- 개요

반다비체육센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개 · 보수와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관리 · 감독 함

- 업무 내용
- (1) 시설물 유지관리

- 반다비체육센터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공간 유지
 - 반다비체육센터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이 입주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반다비체육센터 설치 시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로 축소 및 폐쇄하는 것을 금지함
 - 반다비체육센터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반다비체육센터에 사무실이나 활동공간을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반다비체육센터의 금연구역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반다비체육센터의 공간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정함

(2)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개·보수 계획 수립 및 추진

-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반다비체육센터의 개· 보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시행해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의 경우 7:3(기금: 지방비) 비율 적용 권고
-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업무에 반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증축. 리모델링, 시설 및 설비 신규설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사후관리와 재인증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BF 재인증 의무화 '21. 12. 4.시행)

(3)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

- 지방자치단체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의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수행여부 점검 및 지도감독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
 - 반다비체육센터의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유지 상태의 확인 점검
 - 반다비체육센터의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정밀검사의 수행상태 감독
 - 재해관리체계의 적합성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이용자 활동에서의 안전확보 및 유지상태의 확인점검
- 안전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지도감독
- 사고통계 및 민원사항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노력
- 기타 반다비체육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험가입

● 반다비체육센터는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영조물보험 및 재해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5) 반다비체육센터 종사자 안전교육

- 반다비체육센터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6)
- 반다비체육센터 내부 및 용역업체 시설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강사 초청 등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반다비체육센터 종사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함
- 반다비체육센터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6) 반다비체육센터 안전점검

-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대표자(시설의 장)는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 횟수 및 시기: 연2회 국토안전관리원 SFMS 등록 수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시설장)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시설장은 응해야 함).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7)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프로그램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 각 반다비체육센터 시설현황에 맞는 종합안전매뉴얼 작성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안전경영인증 시범사업 참여권유)
 -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 경과 등 신속 보고 철저
 - 반다비체육센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보고체계 상시 유지
-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 신규「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6

〈참고〉 반다비체육센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점검

구분	관계법령	점검대상	점검주체(기관)	점검주기			
소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점검 (소방대상시설물의 관 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별점검:소방서	종합정밀검사 연1회, 작동기능점검 연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등 법률 시행규 [;] 별표1)			
전기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3년 1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설비	시장·군수·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반기 1회			
	도시가스 사업법	도시가스사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연 1회			
수질	수도법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지방자치단체	저수조 청소 연2회 수질검사 연1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	수련시설	반기 1회			
시설물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월1회 이상			
특별법		제1종시설물 : 연면적 5 만㎡ 이상 건축물 제2종시설물 : 연면적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제1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천㎡ 이상 운동시설 제3종시설물 : 연면적 1 천㎡ 이상 5천㎡ 미만 인 운동시설 중 준공 후 15 년이 경과된 건축물		안전 등급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	전점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4년에	3년에
					반기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B·C	1회 이상	3년에	2년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		등급	414	1회 이상	1회 이상
		조, 시행령 제5조)		D·E	1년	2년에	1년에
				등급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제8조)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1 연1회 정기검사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별표7) 연5회 이상 (방역소독)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및 시행규칙 제43조의9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관리 및 매뉴얼에 따른 훈련 연1회
- ※ 체육시설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 제23조 체육지도자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정기평가 연1회)

•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전직원	(공공 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 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수련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연 1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 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최초 선임시/이후 2년 내 1회 이상	
전기안전 관리교육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	기술교육 – 3년 특별교육 – 최초선임시 6개월 이내	
위험물안전 관리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 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신규/정기(2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기	
근로자안전 보호교육	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3 참조	
체육시설 안전·위생 교육	전직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시행규칙 별표6 참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직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매년 1회(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매년 1회(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회(1시간) 이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2조 승강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정기(3년)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별포8)

안전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자교육 연간 16시간, 사무직 매분기 3시간

5 반다비체육센터 설계 지침

1) 외부시설

장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에 도착하며, 가장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미니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함

- 그러나 휠체어, 자전거 또는 도보로 체육시설에 도착하는 사람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공용 도로에서 아래의 지점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명확한 표지판과 조명을 갖춰야 함
- 주차장, 특히 장애인용 주차 공간 / 하차 구간 / 안전한 경로를 통해 시설로 들어가는 주요 출입구 / 덮개
-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24(4.17%/2.39°)이하로 설치

• 보행장애물

- 보행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음
- 가로등, CCTV, 안내판 등은 접근로와 간섭되지 않도록 녹지공간 등에 설치하여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1) 주차장

-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시설 규모에 적합한 장애인용 주차공간의 최소 수량을 제공함
 - 장애인 주차공간을 집중 배치하고 정문부터 시설 건물까지 표지판 설치함
 - 각 주차공간은 바닥과 수직 표지판을 이용해 명확하게 배치하고 표시함
 - 주차공간은 건물의 정문에 가능한 한 가깝게 배치해야 한다. 입구까지 연결된 경로가 비포장 상태인 경우 해당 거리는 50m 이하여야 하며, 포장된 경우 최대 100m까지 가능함
 - 주차장 표면은 매끄럽고 평평해야 한다. 자갈 포장과 같이 표면이 고정되지 않은 언바운드

표면은 허용되지 않음

- 연석(갓돌)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횡단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 단차를 없앤 구간이 있어야 함
- 티켓, 전자카드 또는 키로 작동되는 주차장 차단기의 높이는 BS 6571-4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차량 높이 제한 장벽은 장애인용 개조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수직 간격이 2.6m여야 함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편의증진법상의 기준보다 더 많은 장애인 주차 공간이 필요함(최소 20면 또는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권장)
- 장애인주차장 빗금 공간 양쪽 설치
 - 보조석 승하차 및 전 · 후방주차가 모두 가능하도록 빗금 공간 추가
- 오천 시를 고려한 장애인 주차장 지붕(캐노피) 설치 및 장애인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에 우선 설치 필요

(2) 하차구간 및 시설 집입로

● 하차구간

- 하차 구간은 정문에 인접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차 구간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하차 구간은 '테일 로딩'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길어야 함
 - 정문에 하차지점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규모 시설은 가장 가까운 하차지점과 체육시설 간 거리가 비포장 상태인 경우 50m 이하여야 함

■ 시설 진입로

-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경로를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도로는 서로 다른 질감과 색상을 사용해 보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함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최소폭은 1.8m 이상이어야 하며. 대규모 시설의 경우 진입로 폭을 늘려야 함
- 체육시설의 경우 하차지점, 주차장, 체육시설 입구 및 실내외 시설로 연결되는 경로는 스포츠휠체어를 밀고 가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가로등, 쓰레기통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은 경로 밖에 설치해야 함

- 길이 6.0m 이하의 불가피한 혼잡 구간의 경우 진입로 폭을 1.2m로 줄일 수 있음
- 휠체어 사용자의 기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코너를 넓힘
- 가로수, 캐노피, 버팀대 등의 아래 높이가 최소 2.1m가 되도록 함
- 접근로는 평평하거나(1:60 미만) 가능한 한 계단과 경사로를 만들지 않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접근로의 경사도가 1:60보다 가파르지만 1:20 미만인 경우에는 경사로를 따라 0.5m. 높아질 때마다 평평한 경사로 참을 만들어야 함.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지점에도 경사로 참을 설치해야 한다. 경사도가 1:20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로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진입로의 높이 변화가 한 계단보다 큰 경우에는 경사로보다 짧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쉬운 사람들도 있으므로 계단 옵션도 제공해야 함
- 자재를 신중하게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진입로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양한 청각 및 촉각 특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색상 조합을 통해 위치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혼란을 야기하며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음.
- 보도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곳에서는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와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가령 그레이팅(배수판)과 같이 통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함
- 횡단보도의 너비는 최소 1.2m 이상이어야 함
- 세심한 조경 디자인은 냄새와 색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위치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랜드마크(표석)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식물들이 진입로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평지에 조성된 진입로는 이동장애인들을 위해 50m 이하의 간격으로 앉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기울기가 1:21과 1:60 사이인 진입로의 경우 추가 휴식 공간을 고려해야 함

(3) 경사로

- 0.3m 이상 상승하는 경사로의 경우 계단보다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짧은 계단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임
- 경사도 1:21은 평평한 것으로 간주하며, 경사도가 이보다 가파른 경우 경사로로 분류함.
- 최대 길이 10.0m의 경우 20:1 및 최대 길이 5.0m의 경우 1:15 사이에서 최대한 평평한 경사도를 유지해야 함
- 절대 최대 경사도는 최대 길이 2m에서 12: 1이다. 이 경사도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함

- 경사로 표면 색상은 경사로 참의 색상과 시각적으로 대비시켜 시각장애인이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든 경사로 표면은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하며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어야 함
- 경사로의 최소 조명도는 100럭스여야 함
- 모든 경사로는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 함. 최소폭은 1.3m로 하되, 스포츠 휠체어가 사용되는 시설은 최소폭을 2.0m로 해야 함. 긴 경사로의 경우 폭을 더 넓히고 통과지점을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
- 이용자들이 취약하다고 느낄 정도로 노출된 경사로인 경우 견고한 난간 설치를 고려해야 함
- 각 경사로의 상단과 하단에 최소 1.5m×1.5m의 경사로 참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경사로 참에는 도어스윙이 없어야 함

(4) 계단

- 일부 사람들, 특히 걸어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이동하기 쉬운' 계단을 선호하므로, 경사로에 인접한 곳에 계단을 설치해야 함
- 열린 챌판(계단의 디딤판과 디딤판 사이에 수직으로 댄 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챌판은 견고해야 함
- 각 계단의 상단과 하단에는 최소 1.2m(1.8m 권장)의 층계참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층계참에는 스윙도어가 없어야 함
- 직선 계단이 곡선 모양 또는 굽은 형태의 계단보다 이용하기 쉽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선 계단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
- 계단의 디딤판과 챌판은 일관된 규격을 적용해야 함(챌판: 0.15~0.17m, 디딤판: 0.28~0.3m).
- 고립된 단일 계단은 설치하지 않음
- 계단의 최대 디딤판 수는 12개로 함
- 각 계단코는 인접한 디딤판과 대비되는 색상과 휘도를 적용함

(5) 기타

- 난간
- 난간은 모든 계단의 양쪽에 설치하며,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단에 오르거나 내려오기 전 먼저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간은 계단의 상단과 하단에서 수평 방향으로 최소 0.3m 돌출되어 있어야 함
- 난간의 색상이나 휘도는 배경과 구별되어야 함

■ 도로 시설물

- 도로시설물은 시각장애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위치를 선정해야 함
 - -도시 시설물은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관심을 집중시키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

진입(접근)

- 건물 입구는 외관에 명백한 특징이 있어야 하며 색상, 조명 및 표지판을 이용해 눈에 띄도록 부각시켜야 함(돌/금속과 같은 딱딱한 자재를 이용하는). 하드 조경인 경우 색상과 질감이 균일한 넓은 영역은 피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입구 및 주요 진입로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건물을 연결시키는 한편 막막하고 활량한 진입로는 피해야 함
- 다음 요구사항 참고
 - 입구로 연결된 경로는 차량과 분리해야 함
 - 많은 장애인들이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50m에 불과하므로, 주차장 및 하차 지점에서 입구로 연결되는 경로는 최대한 짧아야 함
 - 정확하고 분명한 표지판을 올바른 위치에 설치함
 - 창문, 문 및 기타 물체가 길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밖으로 열리는 모든 문은 보다 안쪽으로 설치하거나 난간을 설치해 보호해야 함
 - 입구와 인접한 장소에 적절한 좌석을 제공해야 함. 길이가 50m 이상인 보도의 경우 좌석 및 휴식장소를 제공해야 함. 또한 좌석 엮에 휠체어 사용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함. 좌석 및 휠체어 공간은 보도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야 함

■ 레이아웃(배치)

- 도로 폭은 최소 1.8m 이상이어야 함. 나무와 같은 주변 장애물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좁아진 혼잡구간은 전체 길이가 6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절대 최소폭을 1.2m까지 허용됨
- 다른 보도와 교차하는 교차로의 경우 완만한 각도 또는 둥근 각도를 적용함
- 설계자는 '포용적 이동성'을 참조하여 보행로 설계 및 경사도가 안전하고 적절한지 확인해야 함
- 보행로 배수로의 횡단 경사는 가파른 경우 휠체어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재

- 시설로 연결되는 주요 경로는 자갈길과 같은 고정되지 않는 형태의 언바운드 표면을 피해야 함
- 모든 표면의 접합부는 평평하고 균일해야 함
- 모든 그레이팅은 포장과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접근로 경계 너머에 위치시켜야 함
- 블록 포장은 돌출부 없이 고르게 깔아야 함
- 움푹 들어간 배수로는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진입로에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보행로는 조명시설을 잘 갖춰 어둡고 밝은 명암 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100럭스, 주요 진입로의 경우 50럭스)

- 표지판

- 표지판은 세심하게 검토된 포괄적 표시 체계의 일부로서.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세심한 위치 선정 / 명확하고 간단하며 논리적인 표시

2) 내부시설

(1) 입구

- 건물 입구는 분명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형태로 설계해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을 참고해야 함
 - 입구는 건물 외관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바로 앞을 평평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 입구는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그룹을 위해 분리된 별도 입구를 설치하지 않음
- 출입문은 진입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해야 함
- 출입구(문)은 단차 없이 수평접근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 주 출입구 앞은 비가림막 또는 처마를 설치하여 우천시 출입자 밀집으로 인한 혼잡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입구 로비

- 입구의 레이아웃 및 크기는 해당 시설의 규모 및 유형에 적합해야 함. 내외부 (로비) 도어가 설치된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첫 번째 도어를 지나 두 번째 도어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구 로비의 크기가 중요함
- 입구 로비의 크기 및 디자인은 휠체어 사용자가 스포츠휠체어 또는 일용 의자를 밀며 시설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신발이나 휠체어/버기 바퀴의 습기가 건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 로비에 습기 제거 표면/매트를 설치해야 함. 이때 매트는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코이어(코코넛 열매 겉껍질로 만든 거친 섬유) 및 기타 유사한 재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입구 로비에서부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안내 방법을 달리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이동 동선에 따라 촉지가 가능한 안내판 설치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
 - 복도 등 손잡이에 규격에 맞는 점자표지판 부착 (실별 안내 및 방향안내)
 -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은 규격에 맞는 표준형 블록사용하며 부착시 바닥과 높이가 같도록 매립
 - 대지 경계에서 시설 출입구까지 접근로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연속 설치
 - 규격에 맞는 선형 블록을 방향까지 고려하여 설치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체육관 접근 시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이동 동선, 거리, 시설명 등을 안내)
 -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참고
 - 청각장애인용 안내시설
 - 안내판 설치 시 색상, 글자체 등 시각적으로 확인 용이하도록 디자인

• 픽토그램 등의 그림을 함께 사용

(3) 로비/접수 구역

- 접수 구역의 레이아웃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사람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의 필요성을 최소화해야 함. 편리한 접수 구역을 위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접수 데스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접수 데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한 데스크의 위치 선정 및 적절한 색상/조명 사용이 포함됨
- 접수 구역에서 일하는 직원이 입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함
- 십자회전문이 설치된 경우 유모차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할 수 있는 패스 게이트(pass gate)가 있어야 함. 이 게이트는 전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십자회전문이 회원카드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체 작동되는 경우에는 패스 게이트도 자체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승강기. 계단은 접수 데스크와 가까이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주요 시설을 직접적인 가시선에 위치시킬 수 없는 경우, 명확한 표지판을 통해 해당 위치를 나타내야 함
- 이용자가 기다리거나 휴식할 수 있는 적절한 좌석을 설치해야 함
- 접수 구역 내 음향은 명확한 음성 명료도를 확보하고, 특히 접수 데스크 직원들과 방해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 유리처럼 단단한 반사 표면은 천장, 카펫 및 커튼과 같이 소리를 흡수하는 보다 부드러운 표면과 음향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함.

(4) 접수 데스크

- 접수/예약 데스크가 있는 시설의 경우. 접수/예약 데스크는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
- 카운터는 데스크 뒤의 장애인 직원 및 데스크 앞의 장애인 방문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휠체어 사용자, 키가 작은 사람,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 됨
- 접수 데스크에는 높이를 낮춘 부분이 있어야 함
- 전맹 및 약시 시각장애인이 카운터 위치를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카운터 상단과 전면을 시각적으로 대비시켜야 함

- 스크린과 그릴은 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
-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청각감응장치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표준 기호를 사용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청각감응장치는 카운터의 높이를 낮춘 부분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함).
- 수영을 비롯한 일부 스포츠 활동은 참가자가 보조견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접수 구역 내에 보조견을 위한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함

(5) 경사로

- 동일한 층에서는 경미한 높이 변화를 피해야 함. 그러나 높이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든 경사로 및 계단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함. 두 개의 높이가 적용된 구조인 경우 다음을 충족시켜야 함
 - 모든 경사로는 막힘없는 최소 유효폭을 1.5m로 해야 함. 단. 체육시설 건물의 '스포츠 휠체어 구역'은 대형 스포츠휠체어 2개가 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폭을 2.5m로. 늘려야 함
 - 경사로의 기울기는 가능한 완만해야 하며, 경사도가 1:20보다 크지 않은 경우 0.5m 미터 상승할 때마다 경사로 참 또는 휴식 지점을 제공해야 함
 - 연결된 여러 경사로들의 최대 상승 높이는 2.0m로 제한함
 - 예외적인 상황에서 경사도가 1:12보다 가파르지 않고 경사로 참들 간의 최대 간격이 2.0m인 짧은 경사로를 통합시킬 수 있음
 - 경사로 사이에 설치된 경사로 참의 길이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함
 - 경사로 표면은 단단히 고정시켜 미끄럼 방지 처리한 표면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함

(6) 내부통행

- 복도

이용자가 거쳐야 할 도어의 수 및 복도 길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설계해야 함. 내부 기둥들의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설계 제약 내에서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통행구역에는 최대한 위치시키지 않도록 함. 통행구역에 기둥을 위치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절한 장식 및 디테일을 통해 부각시키고 보호해야 함

- 가로막는 것이 없는 복도의 폭은 최소 2m 이상 되어야 함
- 그러나 막힘없는 복도 폭이 1.8m 미만인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길이 1.8m 길이, 막힘없는 최소 폭 1.8m의 통행지점이 있어야 함
- 휠체어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주요 경로를 따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폭을 최소 2.0m 이상으로 늘려야 함
- '스포츠 휠체어 구역'의 경우 막힘없는 복도 폭은 대형 스포츠 휠체어 사용자들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2.5m로 함. 그러나 최소 길이 2.5m. 방해 받지 않는 최소 폭 2.5m의 통행지점을 통합시킨 경우에는 최소 2.0m로 줄일 수 있음. 이때 통행지점 간 간격은 5m. 이하여야 함
- 복도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복도에 설치된 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함
- 복도는 통행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함. 가령 소화기, 라디에이터 등은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또는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돌출되지 않게 설치해야 함
- 가능한 경우 방향이 바뀌거나 서로 인접한 복도 벽은 완만하거나 둥근 코너를 형성하도록 해야 함
-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복도로 열리는 도어는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여야 함
- 복도 끝에는 유리를 설치하지 않음

난간

- 작더라도 높이 변화가 있는 모든 곳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은 적절한 손잡이와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음을 고려해야 함
 - 쉽게 구분되도록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과 밝기를 적용해야 함
 - 잡기 편하도록 외경은 45~50mm로 함
 - 손잡이 지름은 3.2m 이상 3.8cm 이하여야 함
 - 연속적인 형태여야 하며, 경사로 또는 계단의 상단과 하단 끝부분은 '안으로 말린' 형태로 최소 0.3m 돌출시켜야 함
 - 계단, 경사로 또는 복도로 돌출되어 최소 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모든 난간은 물리적 시각적 안전을 제공하도록 설계해야 함

- 도어

- 도어(문)는 많은 장애인 및 스포츠 가방을 짊어진 사람들의 이동에 장애가 되므로, 건물의 도어 수는 최소로 유지해야 함. 제대로 설계 및 배치하지 않은 도어는 버겁고 불편할 수 있음. 도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모든 도어는 시설 유형 및 규모에 적합한 최소 도어 개방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해야 함
 - 양문 도어는 한쪽 문짝으로도 두 번째 문짝을 사용하지 않고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개방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가능한 경우 모든 도어는 쌍여닫이보다 외여닫이로 설치한다. 사용하기 어려운 반턱이음 도어는 설치하지 않음
 - 모든 도어는 앞쪽 가장자리로부터 0.3m 이상의 벽 공간이 확보되도록 위치시켜야 함. 이상적으로는 스포츠별 상황에 따라 0.5m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도어는 최대 도어 개방이 보장되도록 최소 90 일까지 열리게 설계하고 위치시켜야 함
 - 도어는 복도쪽이 아니라 룸쪽으로 열려야 함. 복도로 열리는 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어 개폐(도어 스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설치하거나 가드레일로 보호해야 함. 모든 가드레일은 복도의 최소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 외부도어

- 모든 대규모 시설 및 휠체어 스포츠가 많이 진행되는 시설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도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회전문은 피해야 함
- 출입문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고광택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시설의 규모 및 유형에 적합한 폭이어야 함
 - 수평 임계값(최대 수직 돌출 15mm)을 충족시켜야 함
 - 인접한 벽 및 칸막이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투시 패널이 있어야 함
 - 자동문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초인종이나 인터폰을 설치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리문 및 이와 관련된 측면 패널의 경우 프레임(틀)없이 전면 유리로 된 출입문은 사용하지 않으며, 다음 요구사항을 참고 함

- 지면에서 1.4~1.6m 위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표지판 및 로고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구분되도록 해야 함
- 유리가 바닥까지 이어진 경우 0.85~1.0m의 낮은 높이에도 안전 표시를 설치해야 함
- 도어 양쪽에서 이 같은 표지판 및 표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동문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함
 - 미닫이, 바이폴딩 또는 텔레스코픽(연동식) 도어 여닫이(스윙) 또는 폴딩(접이식) 도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자동 여닫이 또는 접이식 도어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함. 특히 앞쪽 가장자리(리딩 에지)는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앞쪽 가장자리는 도어의 나머지 부분과 대비되도록 강조해야 함
 - 정전 시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작동해야 하며, 서 있는 사람은 물론 앉아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도 배려해야 함
 - 센서로 제어되는 자동문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전동문을 설치한 경우. '푸시패드'는 0.75~1.0m 높이에 위치시켜야 하며,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 및 휘도를 적용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함

(7) 승강기

- 일반 출입을 위한 승강기는 접수 구역 및 주요 통행 경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승강기 사양은 다음과 같음
 - 최소 규모의 다층시설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은 승강기 1대가 고장 나거나 작동되지 않아 사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시설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 2대의 일반 출입용 승강기를 제공해야 함
 - 승강기 도어는 시설의 크기와 규모 및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유형에 적합한 개구폭을 적용해야 함
 - 휠체어 스포츠 승강기가 있는 체육시설은 한 번에 최소 네 대 이상의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20인승 이상 적용해야 함
 - 승강기 차 안에서는 도착 층수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시와 함께 음성 안내를 제공해야 함.
 - 승강기 컨트롤 버튼들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조작하기 쉬워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는 곳에 위치시켜야 하며, 버튼들은 촉각으로 구분 가능한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

3) 피난(비상탈출)

-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장애인들이 건물에서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고려해야 함. 장애인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피는 다음 사항에 좌우됨
 - 관리와 준비
 - 레이아웃(특히, 대형 스포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 건물 건설
-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축가와 건물 관리자가 다음 사항을 확립하기 위해 협의해야 함
 - 장애인의 탈출 수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
 - 장애인의 탈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 수
 -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비상 탈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동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건물을 사용하게 될 장애인 수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음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 이동장애인
 - 휠체어 사용자
 - 농인 및 난청 청각장애인
 - 전맹 및 약시 시각장애인
 - 인지장애인
 - 천식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
- 법적 기준에 의한 피난시설 이상의 현실적인 피난시설 설치
 - 완강기 및 구조대 외 중증장애인 사용이 가능한 미끄럼대, 경사로 등의 피난시설 설치
 -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
- 청각 및 시각 장애인 경보시스템 설치
 - 시각장애인 대피를 위한 비상벨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 청각장애인 대피를 위한 경광등 및 조명 문자안내판 설치

4) 위생시설

(1) 화장실

- 시각장애인용 화장실 안내시설 설치
 -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인지할 수 있는 촉지가능 안내표지 필요
 - 출입구 벽면은 남녀를 구분하는 점자표지가 설치되어야하며 출입문 앞 점형 블록 설치
 - 자동문 조작버튼에 점자로 표시 되어야하며 음성 안내 장치 설치
- 화장실내 응급상황대처를 위한 비상호출벨 설치
-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곳에 설치
- 세면대는 휠체어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확보
 -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 확보
- 모든 체육시설은 각 층에 분명한 표지판이 부착된 적어도 한 개의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갖춰야 함.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성별에 관계없이 장애인 이용자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성별이 다른 도우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남성 또는 여성 전용 구역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 큐비클을 제공하는 것은 추가 설비로 간주하며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 설비를 대체할 수 없음
- 이 화장실들은 비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 큐비클은 사교, 다과, 탈의 및 직원 구역을 비롯한 시설 내 모든 구역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수영장 또는 필드를 비롯한 체육시설 모든 부분의 40m 이내에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함
 -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 큐비클은 탈의구역 내에 화장실을 갖춘 장애인 전용 남녀공용 탈의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탈의구역에 인접해 있어야 함
 - 탈의실에 전용 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 큐비클은 주요 시설 입구 가까이에 위치시켜 경기자와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과 관람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규모와 유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수가 결정됨. 그러나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화장실 시설이 있는 모든 곳에 제공해야 함
- 모든 화장실의 출입문 근처에 양각 처리된 표지판을 제공해야 함
- 장애인화장실은 화장실 내부와 외부 동시 설치 또는 화장실내 장애인화장실 2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함

(2) 탈의구역

- 모든 탈의구역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값비싼 설계 특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사항과 레이아웃에 주의함
- 잔디경기장만 제공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개별 남녀공용 탈의실을 최소한 한 개 이상 제공. 탈의실은 성별에 관계없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레이아웃

- 최적의 접근성을 달성하려면 잘 설계된 레이아웃이 중요함
- 부주의한 설계는 개인의 자립성을 축소시키며 최악의 경우 물리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함
 -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탈의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탈의실에서 샤워장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화장실 시설은 탈의실에 인접해 있어야 함

- 남녀공용 탈의실

- 장애인용 탈의구역의 최소 시설은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공간 제공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장애인용 남녀공용 탈의시설은 다른 시설에 추가해 제공해야 함
 - 장애인 전용 탈의구역은 성별에 관계없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탈의실에는 팁업 의자, 샤워기, 변기 및 세면기가 있어야 하며, 규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남녀공용 장애인 탈의실은 표지판을 통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레아아웃 및 다른 공간/영역과의 관계가 중요함

(3) 탈의실 및 샤워실

- 모든 탈의구역이 표준을 충족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탈의구역 설계는 시설 사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 시설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사용을 중할 수 있음
- 최신 시설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단성 및 혼성 탈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 탈의구역에 인접한 고품질 샤워시설 및 화장실
 - 앞에서 뒤까지 깊이가 최소 0.45m(0.5m 권장)인 벤치
 - 성인을 돕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길이 1.8m. 깊이 0.6m 벤치
 - 피부가 민감하거나 쉽게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벤치 매트
 - 어린이 및 장애인 사용자의 손이 닿는 곳 (0.4~1.3m 높이)에 위치한 보관함
 - 목발, 부목 및 의수/의족과 같은 이동 보조장치를 보관하기 위한 높이 1.8m, 폭 0.4m의 '전신' 사물함 4개 이상
 - 모든 탈의구역/탈의실에서 휠체어 사용자 및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체 추진식 스켈레톤 방수 의자로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조기구 없이 이동이 불편한 보행 장애인을 위한 자체 추진식 스켈레톤 방수 의자 최소 2개
 - 휠체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 모든 샤워실에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거나 휠체어에서 접이식 의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반밀폐식 장애인 큐비클이 있어야 함
 - 과도한 경사, 특히 한 방향 이상으로 기울어지는 경사를 피해야 함
- 샤워실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 척수장애인의 경우 샤워도중 배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함

5) 기타시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휴게실,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등)
 -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
 - 휠체어의 출입이 편리하고 보관이 용이한 편의시설 제공

- 장애인 화장실 및 휴게실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소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 휠체어 보관 장소
 - 스포츠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공간과 근접한 곳에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휠체어 보관장소 제공

6) 수영장 설계 지침

(1) 수영장 접근경로

- 풀로 이동하는 경로를 설계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풀 접근 경로의 경우 장애인들은 일반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없어 이 같은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풀 접근 경로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함
 - 혼동스럽지 않게 샤워 구역으로 직접 연결해야 함
 - 각종 위험, 특히 고여 있는 물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함
 - 보행 가능한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탈의실과 풀장과 사이에 난간을 설치해야 함
 - 통행 경로의 중요 지점에 촉각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입수 시설

- 수영장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설계팀과 수영장 관리팀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입수를 위한 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됨
 - 수영장 접근용 사다리
 - 경사진 접근로
 - 계단 (내장형과 이동식)
 - 수중플랫폼 리프트
- 안전사고 예방 및 입수자 편의를 위한 입식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벽 부착 사다리형 입수방식은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큼
 - 풀 이용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최소 폭으로 설치(교행 불필요)
- 기기 고장 등을 대비하여 입수용 리프트, 입식계단 등 2가지 이상의 입수 방법을 병행하면 좋음

(3) 바닥 마감재

- 바닥 마감재는 안정적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된 것이어야 하는데. 보통 이러한 바닥재는 좀 더 거친 부분이 있음
- 일부 장애인 이용자들은 특히 장시간 풀에서 수영한 후 한층 더 피부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거친 바닥에서 이동하기 위해 워커나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바닥 마감재는 가능한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유지 보수해야 함
 - 벽 표면은 돌출부,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특히 피부가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아야 함

(4) 온열 쾌적성

- 일부 장애인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수영장 같은 차가운 환경의 추위에 특히 취약할 수 있으며, 샤워 후 물기를 제거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따라서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불편한 온도 변화를 피한다.
 - 외풍이나 냉기가 도는 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과 도어를 위치시키고, 세심하게 설치해야 한다.
 - 환풍 그릴의 경우 냉기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몸이 젖은 상태에서는 따뜻한 공기도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5) 기타

- 대부분의 최신 풀들은 물이 풀 주변과 수평을 이뤄야함
- 이러한 배치는 상체에 힘을 덜 주게 되어 풀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쉽고 몇 발만 이동하면 풀 주변과 풀 사이 공간을 가로지를 수 있음
- 단지 풀 주변과 풀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므로, 풀 가장자리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 풀 가장자리는 사용자가 풀에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색상 및 촉각 정보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음
 - 성인 장애인에게 충분한 부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심은 1m이상 1.3m이하여야 함. 이보다 수심이 낮은 경우 풀 바닥에 다리가 닿게 되며, 낮은 수심은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기 어려움

- 이와 달리 연습용/강습용 풀은 얕은 수심을 선호하는 사람 및 어린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
- 중증장애인샤워실(가족샤워실)을 최소 4개소 설치하여야 함
 -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여 크기는 휠체어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함

7) 체육관 설계 지침

(1) 체육관 규격 등 설계 일반

- 실내체육관은 좌식배구, 골볼, 휠체어농구 등 최대한 많은 종목의 장애인스포츠 전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 체육관 규격은 지자체 사정에 맞게 조절하여 설계 가능하나. 농구 코트(28m*15m) 이상의 규격이 나오도록 반영이 필요함
- 농구코트 끝 라인에서 벽과 3m 거리의 여유 공간이 필요함
- 체육관의 천정 높이는 종목에 따라 선택하되 15m이하로 설정함
-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여 타 종목 및 체육관련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실 구성 필요함
- 용기구의 효율적 보관을 위해 창고를 넉넉히 확보할 필요함
- 체육관 내 무대 설치 시 휠체어 장애인을 배려하여 무대 단을 낮게 설정하여야 함

8) 종목특화형 설계 지침

(1) 설계 일반

- 체력단련장이나 수중운동실 등 기존 서비스공간 외에 특정 종목의 전국 대회(리그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경기장을 시설 내 설치
- 수중운동실은 장애인, 노인 등의 수중 운동(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위해 수영장이 설치되지 않는 '체육관형 센터'와 '종목특화형 센터'에 설치 권장

9) 반다비체육센터 설계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적용 : 〇 부분적용 : △ 미적용: × 해당사항 없음 : -

분류	소분류	체크리스트	평가
접근공간	대지출입구	대지 출입구의 위치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되어있고 도로에서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다.	
	인접보도와 보행접근로의 경계부분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다.		
	가로에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행접근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작은 단차도 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다.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완전하게 분리 되어있다.	
		종단 기울기 1/24 이하, 횡단기울기 1/50 이하이다.	
		보행접근로주요 보행접근로는 우산을 쓴 사람, 훨체어, 유모차 등 2명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이다.	
		조잡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 간결하다.	
		보행접근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가 없다.	
	주차장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위치이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건물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	
		일반주차구역의 크기는 폭2.5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일시적인 부상자 등을 배려하여 폭3.0m, 길이 5.0m 이상의 주차구역이 있다.	
		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적절한 안내표시와 유도 표시를 설치하여 식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행안전통로는 부지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물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차량간섭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진입공간	주 <u>출</u> 입구	주출입구는 시설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인지하기 쉬운 위치이다.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와의 연결부분에는 작은 단치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다.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눈, 햇볕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주출입문은 유모차나 양손에 집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에게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이다.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2m 이상 확보하고 있다.	
	로비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사람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이다.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위치는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쉽다.	
		안내데스크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동시에 제공, 외국인등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을 갖추고 있다.	

분류	소분류	체크리스트	평가
이동공간		모든 복도는 훨체어나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유효폭 2m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소화기, 안내 사인 등 벽면 및 천장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된 장애물이 없다.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 등 특정공간은 바닥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	
		벽이나 바닥마감재의 재질, 색상 등을 충별 또는 영역별로 달리하여 이용자가 건물 내 현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손잡이의 재질은 차갑거나 미끄러운 금속이 아닌 잡았을 때 따뜻한 재질이다.	
		복도는 방향전환이 적고 간결하고 명쾌한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 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목적지까지 유도하고 있다.	
	실내출입문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이다.	
		문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하고 있다.	
		모든 출입문은 유효폭 2m 이상 확보하고 있다.	
		노인,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문턱이나 홈과 같은 단차가 없다.	
		어린이등과 같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다.	
		복도 벽면 마감재와 실내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다.	
	경사로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향 설치하고 있다.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마감재이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이여, 횡단구배는 없다.	
	계단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형이다.	
		디딤판 너비와 챌면 높이는 균일한 치수이다.	
		디딤판 너비는 28cm 이상, 챌면 높이는 18cm 이하이며, 어린이와 노인 등의 이용이 많은 경우 디딤판 너비는 30cm 이상, 챌면 높이는 16cm이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챌면을 설치하고 있다.	
		디딤판, 챌면, 계단코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의 색상/명도/채도/질감 등을 달리 하고 있다.	
		특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지점은 식별성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계단의 측면에는 2단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저층 건물일지라도 층 규모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승강로비는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이다.	
		조작설비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시작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구조이다.	
		승강로비, 승강기 내부에 적절한 운행정보 및 층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끝부분은 인지가 쉬운 색상, 재료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진입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음성 안내장치 등의 필요한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방재 및 피난시설	관련소방서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피난훈련에 대한 시행계획 및 피난 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하고 있다. 화재실 화염과 연기로부터 이용자의 위험성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화 및 구획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곳에 설치하며, 피난구까지 연속적 안내하고 있다. 위생공간 화장실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실내전체가 조회를 이루고 함	방연 으로
구획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곳에 설치하며, 피난구까지 연속적 안내하고 있다. 위생공간 화장실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실내전체가 조회를 이루고 함	으로
안내하고 있다. 위생공간 화장실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실내전체가 조회를 이루고	
	있다.
외기에 면하게 배치,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	있다.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여자화장실은 물론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있	(다.
화장실주변 벽, 바닥, 천장 마감재 등을 달리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남이 장실, 다목적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후 화
일반 대변기 부스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 출입문의 유효폭은 0.8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하고,
일반 대변기 부스에도 수평 및 수직손잡이, 가방이나 짐으로 둘 수 있는 선반, 원을 걸수 있는 후크 등 편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운동
다목적 장애인, 임산부,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최소 1개소 이상 화장실 하고 있다.	설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2m 이상을 확보하고, 자동문이다.	
유효바닥면적은 폭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휼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사람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내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 안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호출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또는 비 쓰러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탁에
비대형 대변기, 세변기, 소변기 등의 위생기구 및 안전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기교환대등 적절한 편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저귀
수유실 의자나 소파, 기저귀 교환대, 아기침대, 영유아거치대, 세면대, 순간온수기, 전 트, 기저귀전용 휴지통 등의 각종편의설비를 갖추고 있다.	기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수유공간과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	(다.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치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욕실 사워실 접근통로에서 문을 열더라도 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탈의실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탈의실과 연결되는 출입문에 문나 단차가 없다.	턱이
바닥마감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이다.	
입욕이나 사워전후의 체온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 난방을 하고	있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이미 온수에 대하여 색상 및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 냉
접근통로에서 문을 열더라도 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별첨)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유영 규정 예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 운영 규정 예시

○○○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규정

2023, 00, 0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장애 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하다)가 수탁관리 하는 체육시설(바다비체육세터) 관리유영사항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체육시설"이라 "반다비체육세터"에 해당하는 각종 시설과 그 부대시설(설비, 비품)을 말한다.
-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중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 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5. "이용자"라 개인연습. 경기연습. 프로그램참여.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6. "관람자"라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 2조 제 2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 8. "어린이"란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10.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교정시 설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 11. "어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만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 12.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13. "체육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 14. "비영리행사"라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또는 경 기를 말한다.
- 15. "영리행사"란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바자회 그 밖에 유사한 행사(이하 "콘서트 등"이라한다)를 말한다. 다만 캠페인성 비영리행사라 하더라도 콘서트 등 행사를 개최하여 초대권을 발행하거나 입장료를 받을 경우 또는 물건을 매매할 경우에는 영리행사로 본다.

제2장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

-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지자체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 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 ② 지자체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③ 지자체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 여야 하다.
- ④ 지자체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제항)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1. 시설의 개·보수
 -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때
-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및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 에 갈음하다.
 -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장애인 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 2.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 3.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체육활동
 -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 하는 연습 포함)
 -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 8. 그 밖의 사항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 제6조 2(장애인 사용 특례) ① 지자체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 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자체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 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 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3. 장내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본회의 경고 · 지시를 받고도 불응할 때
 - 4. 부득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5.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사로써 사용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화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 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 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야하다
 -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오염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워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1조(사용 및 이용제한)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 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 운영

- 제12조(운영 계획 수립) ① 지자체장은 반다비체육센터가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 기간 등)동안 이루고자 하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일정 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자체장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 실적 보고) ① 지자체장은 연간 사업수행결과를 정리하여 연간 운영현황 등을 문화체육 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자체장은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 전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역장애 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 4인 이상 8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추천하 고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2.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친인척 등 운영대표와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제외
 - ④ 운영위원회는 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 한다.
 -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 2.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의 참여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부의하는 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비공개사유 는 공개해야함).
- ⑥ 운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중앙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관리 의무와 책임) ① 지자체장은 반다비체육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1. 반다비체육센터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 2.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수행여부 점검 및 지도감독
- 3.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
- 4.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유지 상태의 확인 점검
- 5. 반다비체육센터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정밀검사의 수행상태 감독
- 6. 재해관리체계의 적합성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7. 이용자 활동에서의 안전 확보 및 유지상태의 확인점검
- 8. 안전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지도감독
- 9. 사고통계 및 민원사항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10.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6)
- 11.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노력
- 12. 기타 반다비체육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용료 징수

제1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4월~9월)	동 계(10월~3월)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업사용료, 중계방 송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우영ㆍ협약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 료 등의 범위에서 운영협약을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할 때 받는다.
-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2. 초과시간당 이용료: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 ⑤ 사용허가기간 중 경기 또는 행사를 하지 않고 시설물만 존치된 기간은 주간요금의 100분의 50 을 부과하며,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될 때 까지를 전체 사용기간으로 본다.
- 제18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체육행사·문화행사(무대·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춘 경우)와 프로경기는 관람권 판매 수입액의 100분의10, 일반 행사는 100분의 12를 추가로 받는다.
 - ②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입장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다 만. 초과 발행할 경우 그 초과분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관람권의 종류별 평 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③ 관람권과 무료입장권은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 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자체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제15조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입에 의한 사용료 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 및 자치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 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4. 만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 련된 자립지원 활동
 - 7.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8.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9.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경기 및 훈련 등
 - ②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20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 50을 감면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 8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 7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자
- 11. 「○○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제21조(사용료의 반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하다.
 - 1. 사용일 기준 3일전 취소 : 전액 반환
 - 1의2. 사용일 기준 1~2일 전 취소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자체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 환(단,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1~2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 환 및 사용료의 10%을 배상한다.)
 - 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반환
 -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 ③ 사용자의 취소 신청 시 5 근무일 이내 환불처리한다.
- 제22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시 및 자치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 2. 전용사용자 측의 담당임원, 행사진행요원, 출전선수와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 3. 보호자가 있는 만 6세미만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 증을 휴대한 자
 - 4. 지자체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어른 1,000원
 - 2. 어린이 500워
 - ③ 지자체장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입장권을 발행 하지 않고 인원계수(기)에 의한 입장인원을 파악하여 전용사용자에게 일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구(매표구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따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지자체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4조(재해예방 및 보험가입) 1,000명 이상의 관람객 입장이 예상되는 문화행사(무대·조명·음향 시설을 갖춘 경우)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연법시행령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해 공연 7일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 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6조(정산절차) 매표가 끝나고 수표 완료된 입장권 및 잔표는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 수입액을 산 출한 후 사용료를 산출한다.
- 제27조(신고) 사용자는 대관(사용) 신청 전에 집회일 경우에는 집회신고를, 공연일 경우에는 공연신 고를 관련 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 체육시설 관 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 될 경우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 체육 시설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 및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자체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 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부칙(2023.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